

노인요양원 살림하우스 이용자 입소관리요령

제정 2019. 9. 16.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요령은 노인요양원 살림하우스의 이용자가 입소과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이용자 및 보호자를 편리하게 하고, 효율적인 사무가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'이용자'는 '노인요양원 살림하우스'(이하 '살림하우스'라 한다)의 시설급여를 받고 입소한 대상자를 말한다.
- ② '보호자'는 이용자의 보호자로서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책임진다.

제 2 장 입소자의 준비사항

제 3 조 (입소준비 및 신청서 작성)

이용자, 또는 보호자는 '국민건강보험공단'(이하 '공단'이라 한다.)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하여 시설 입소 가능 등급을 받아야 한다. 이때 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와 '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'를 발급받는다.

- ① 이용신청서: 살림하우스 서류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
- ② 장기요양인정서: 공단 발급
-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: 공단 발급

제 4 조 (신청서 제출 및 입소상담)

- ① 내방: 입소상담 후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
- ② 팩스/우편: 전화상담 후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송한 후 전화확인

제 5 조 (대기자 순서)

- ① 이용자 대기자가 있을 때, 대기 순서 번호를 부여 받는다.
- ② 살롬하우스의 이용자는 1,2,3 급의 균형을 맞추어 받으므로, 상황에 따라 약간의 순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. 단, 상기의 이유가 아닌 경우 대기자의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 6 조 (계약시 필요한 서류)

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

- ① 장기요양인정서 : 공단발급
-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: 공단발급
- ③ 사전건강조사표 : 살롬하우스 양식
- ④ 건강진단서 : 병원발급 (결핵, 음 검진 포함)
- ⑤ 처방전(복용약) : 병원발급
- ⑥ 의사소견서 : 병원발급
- ⑦ 주민등록등본 : 관공서
- ⑧ 가족관계증명서 : 관공서
- ⑨ 도장 및 신분증 (어르신, 보호자)
- ⑩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
제 7 조 (입소시 준비물)

- ① 의류: 실내복, 속옷, 양말, 실내화
- ② 개인소지품: 로션, 면도기, 칫솔, 양치컵, 물병, (핸드폰)
- ③ 신분증 도장: 어르신과 보호자의 것, 계약시 필요

제 3 장 입소관련 직원의 매뉴얼

제 8 조 (입소 상담자)

- ① 이용자, 또는 보호자가 살롬하우스에 입소할 것을 문의할 경우 상담자는 제 3 조의 '입소준비침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.
- ② 입소문의에 대한 상담은 사무사가 한다. 다만 사무사가 전화나 응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직원이 동일한 매뉴얼 대로 친절하게 안내해야 한다.
- ③ 내방자에게는 '이용신청서'를 제공해주고, 전화 문의자에게는 이메일로 송부해주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.

제 9 조 (입소 계약자)

이용자를 모시고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.

- ① 담당: 입소계약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. 상황에 따라 원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.

- ② 시간: 사무국장은 입소일시를 보호자와 미리 약속하고 각 담당자에게 알려서 입소절차를 준비한다.
- ③ 장소: 입소계약 자리는 이사회실로 한다. 단, 이사회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실이나 로비의 소파로 대신한다.
- ④ 인원: 사무국장(또는 원장), 간호팀장(또는 간호조무사)
 - 1) 사무국장은 보호자와 입원의사를 확인한 후, 이용자가 작성할 것을 먼저 작성한 후, 배정된 방으로 모신다.
 - 2) 간호팀장은 간호팀원에게 이용자를 방으로 모시고 가서 건강상태를 파악하게 한다.
 - 3) 사무국장과 간호팀장은 보호자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, 시설 이용에 대하여 안내한다.
 - 4) 모든 사무가 끝나면 사무국장과 간호팀장은 보호자와 함께 어르신이 입실하신 방으로 가서 함께 인사하고 안부를 여쭙고 나온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살롬하우스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